

소형저장탱크 재검사기준 개정

우리협회는 소형저장탱크 보급활성화 방안으로 소형저장탱크의 재검사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LPG수입사 등과 추진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재검사주기가 개정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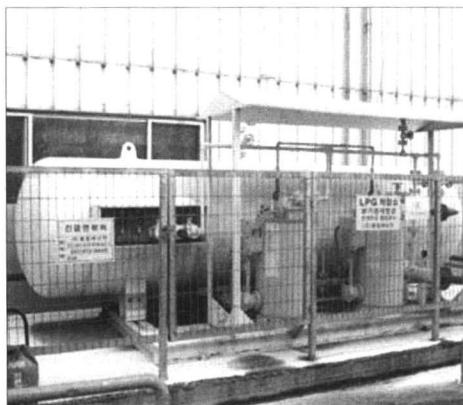
1. 저장탱크 재검사기준 (KGS PV003) 개정내용

□ 개정(안)설명

○ 소형저장탱크의 검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함

- 탱크의 개방 없이 검사하는 외 관검사 및 설치상태검사는 5년마다 실시

- 탱크를 개방하여 거사하는 비파괴검사 및 내압시험 등은 탱크의 경과 년수가 20년 이하인 경우에는 10년마다,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실시



□ 신구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1. 일반사항 1.1 적용범위 (내용 생략) 〈신 설〉	1. 일반사항 1.1 적용범위(현행과 같음) 1.2 기준의 효력 <u>1.2.1 이 기준은 「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6조 제 2항 제4호에 따라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의결(안전번호 제07-4호, 2007년 7월 19일)을 거쳐 제정한 것으로서 「고압가스 안전 관리 기준 통합고시」 제15-2-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“저장탱크의 재검사 방법 및 판정방법”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</u>
<u>1.2</u> 참고 자료 (내용 생략)	<u>1.2.2</u> 이 기준은 2007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<u>1.3</u> 저장탱크의 분류 (내용 생략)	<u>1.3</u> 참고 자료 (현행과 같음)
<u>1.4</u> 용어의 정의 a)~f)(내용 생략)	<u>1.4</u> 저장탱크의 분류 (현행과 같음) <u>1.5</u> 용어의 정의 a)~f)(현행과 같음)
〈신 설〉	g) "소형저장탱크"라 함은 액화석유 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.
<u>g)</u> (내용 생략)	<u>h)</u> (현행과 같음)
2 지상식 원통형 저장탱크 검사 〈신 설〉	2 지상식 원통형 저장탱크 검사 <u>2.1 검사 항목 및 재검사 시기</u> 지상식 원통형 저장탱크의 검사 항목 및 재검사 시기는 표 2.1과

현 행	개정안											
	<p>같다.</p> <p><u>표 2.1 검사항목 및 재검사 시기</u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검사항목</th><th>재검사시기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<u>소형저장탱크</u></td><td>2.2에 따른 외관검사 2.3에 따른 설치상태검사</td><td>재검사 시마다</td></tr> <tr> <td>2.5에 따른 재검사준비부터 2.15에 따른 기밀시험까지</td><td>신규제조 후 경과년수가 20년 이하인 경우에는 10년마다,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마다</td></tr> <tr> <td><u>소형저장탱크 이외의 저장탱크</u></td><td>2.2에 따른 외관검사부터 2.15에 따른 기밀시험까지</td><td>재검사시마다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<u>2.1~2.21</u> (내용 생략) <u>2.13</u> 내압시험 <u>2.13.1~2.13.2</u> (내용 생략) <u>2.13.3</u> 시험방법 a)(내용생략) b)내압시험은 원칙적으로 물을 사용하여 실시하며, 시험압력은 저장탱크 본체의 정상부에서 설계압력의 <u>1.5배 이상</u>으로 한다. 다만, 저장탱크의 특성 및 구조상 물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시험전 안전을 위해 전용접부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여 등급분류가 2급 이상인지를 확인한 후 설계압력의 <u>1.25배의 압력</u>으로 공기 또는 질소 등을 사용한 가압시험으로 할 수 있다. c)(내용생략) <u>2.14</u> 기밀시험</p> <p><u>2.2~2.13</u> (현행과 같음) <u>2.14</u> 내압시험 <u>2.14.1~2.14.2</u> (생 략) <u>2.14.4</u> 시험방법 a)(현행과 같음) b)----- ----- ----- ----- <u>1.3배(1.5배로 설계된 경우에는 1.5배) 이상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.1배(1.25배로 설계된 경우에는 1.25배)의 압력</u>----- c)(현행과 같음) <u>2.15</u> 기밀시험</p>	구분	검사항목	재검사시기	<u>소형저장탱크</u>	2.2에 따른 외관검사 2.3에 따른 설치상태검사	재검사 시마다	2.5에 따른 재검사준비부터 2.15에 따른 기밀시험까지	신규제조 후 경과년수가 20년 이하인 경우에는 10년마다,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마다	<u>소형저장탱크 이외의 저장탱크</u>	2.2에 따른 외관검사부터 2.15에 따른 기밀시험까지	재검사시마다
구분	검사항목	재검사시기										
<u>소형저장탱크</u>	2.2에 따른 외관검사 2.3에 따른 설치상태검사	재검사 시마다										
	2.5에 따른 재검사준비부터 2.15에 따른 기밀시험까지	신규제조 후 경과년수가 20년 이하인 경우에는 10년마다,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마다										
<u>소형저장탱크 이외의 저장탱크</u>	2.2에 따른 외관검사부터 2.15에 따른 기밀시험까지	재검사시마다										

